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합13721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정현재

피 고 1. B

2. C

3. D주택조합

4. 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박은범

변론 종결 2019. 12. 4

판결 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2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D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용인시 F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 설하는 사업을 위하여 모집된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¹⁾ 이고,피고 (주)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²⁾ 는 위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 B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고,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G은 2002. 9. 24. 피고 회사와 위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20억 원을 변제기 2002. 11. 30.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2. 9. 24. 5억 원,2002. 9.25. 1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9. 27. 피고 B, C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조합,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09. 10. 16.자 확약서를 작성하여 2009. 10.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11.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1(확약서), 갑 제13호증(2009. 10. 16.자 확약서 칼라사본)은 원본이 아닌 사본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위 각 증거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위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6호증의 1, 갑 제13호증은 그 기재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또한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대여금 약정서와 영수증 등 처분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G이 2002. 9. 24. 浮)묘에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②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당초 (주)G의 대표이사 I로부터 피고 B, C을 소개받았고, I를 통하여 1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3), 4회 변론기일 4)에 이르러 나로부터 피고 B, C을 소개받았고,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5억 원을 마련한 다음 I에게 5억 원을 함께 빌려주자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대여경위에 관한 주장이 심히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4, 5,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모 판사 정종건 판사 권민영